

한국 가정폭력 실태와 사회계층 변인과의 관계 연구*

김재엽**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가정폭력관련 방지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면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의 가정폭력의 실태와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 가정폭력의 실태 및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전국 규모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사회계층적 변인과 아내구타와 관계를 집중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실태는 전체가정의 31.4%가 1년간 부부폭력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 수치를 전국가정수에 환산하여 추정하면 약 400만 가구가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가정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향후 우리 문화와 현실에 적절한 사회복지개입방법의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 서론

가정폭력방지관련특별법이 1997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하고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법적인 제도는 마련되었으나, 가정폭력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과거부터 가정폭력은 우리사회에서 가족 구성원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거나 가정내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은 공공연하게 묵인되어 왔으며,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못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가정의 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가치관이 뿌리깊게 남아 있고, 또한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가정폭력 사실을 감추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동안 가정폭력 문제는 많은 부분 은폐되고 축소되어 왔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일부 여성 단체들은 가정폭력을 사회 문제로서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즈음 가정폭력에 관한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와 TV 시사 프로그램 숫자는 상당히 증가하였고,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서 가정 폭력 문제는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문제로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의 가정폭력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는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특정 지

* 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제간 연구과제 연구지원에 의한 것임.

**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역이나, 보호 시설 등에 있는 특정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임상 개입 방법 개발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Straus & Gelles(1990)가 지적하였듯이 시설이나 상담소의 피해자들은 전체 가정폭력 피해자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사회의 전반적인 가정폭력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연구와 더불어 어느 한 지역이나 특정 대상에 국한된 차원이 아닌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도 가정폭력 실태와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을 위한 전국적인 규모의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한국 가정 폭력의 실태 및 원인을 밝히고 특히 가정 폭력 중에서 가장 심각한 아내구타를 중심으로 실태와 사회계층적 요인이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 부부 폭력, 아내 구타의 개념

폭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또는 잠재적 의도성을 가지고 힘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이 1차 집단인 가정 내에서 그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할 때 이것을 '가정 폭력'이라 한다. 가정 폭력은 다른 폭력 유형과는 다르게 고정된 대상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사되며, 가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교육과 훈계의 도구 혹은 갈등 해결의 한 방법으로 합법화되어 사용되는 특징을 가진다(김재엽, 1996).

가정 폭력은 폭력 행위의 대상에 따라 부부 폭력과, 자녀 폭력, 형제간의 폭력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부부폭력은 부부 사이에서 행해지는 폭력 행위로서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아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폭력은 그 주체에 따라 아내구타, 남편구타로 구분된다. 남편에 의해 아내에게 가해지는 폭력행위를 '아내구타'라고 하고, 아내에 의해 남편에게 가해지는 폭력행위를 '남편구타'라고 한다.

2. 가정폭력의 실태 및 사회계층적 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1) 가정폭력의 실태에 대한 선행 연구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진 비교적 공신력 있는 대표적 가정폭력 연구로는 199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이루어진 조사와 여성개발원의 조사를 들 수 있다. 이 중 1992년 한국형

사정책연구원에서 이루어진 가정폭력 실태에 대한 연구는 남편의 50.5%가 결혼 이후 적어도 한번 이상 아내를 구타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우리 나라의 가정폭력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실태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 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서울시 1,2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 나라 전체의 가정폭력 실태를 밝히는데 지역적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성개발원의 연구는 전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타당한 아내 52사례를 깊이 있는 면접을 통해 임상적 개입 방법과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전달 체계 개발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례들의 수집은 특정시설에 한정돼 있어서 일반화의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서구사회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해 피해자 중심 연구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조사로서 1975년 이루어진 Straus와 Gelles의 전국가정폭력조사(전미 2,143가구)와 이후 10년 뒤인 1985년에 이루어진 전미 3,520가구에 대한 전국가정폭력조사를 들 수 있다(Straus and Gelles, 1980, 1990). 이러한 연구조사 결과 1975년과 1985년 양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높은 폭력률이 발견되었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 조사를 통해 비로서 미국내 가정폭력의 현황 및 원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가정폭력의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이 연구되고 실행되고 있다. 또한 현재 서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한편 1995년(미발표) 전미가정폭력조사결과도 발표될 예정이다.

2) 아내구타와 사회계층적 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사회계층적 변인과 아내구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가정폭력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각 사회계층적 변인이 아내구타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는 각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계층적 변인들이 아내구타와 정비례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반비례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여러 결과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서 사회계층적 요인과 아내구타에 대한 상관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사회계층적 변인들과 아내구타에 대한 상관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의 일부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내구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계층적 변인들로서는 연령, 성별, 교육 수준, 직업의 유무 및 직업 유형, 소득 수준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연령 요인의 경우, Suitor, Pillemer & Straus(1990)는 1975년과 1985년 전미 가정폭력조사에서 연령과 아내구타 사이에 반비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젊은 연령 집단이 중년이나 노년 집단에 비해 폭력률이 높고, 특히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부부 상호간의 폭력 비율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Gelles(1974)의 연구에서는 20

대가 아니라 이보다 연령대가 높은 30대 후반에서 50세까지 부부에서 폭력 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김재엽(1998)의 연구에서는 대상이 60세 이상으로 제한적이지만, 연령과 아내구타와의 상관관계를 찾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까지 연령과 아내구타 사이에는 일관성 있는 상관관계가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성별 요인의 경우, 남편에 의해서 행해지는 아내구타가 남편에 의해서 행해지는 아내 구타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엽, 1997). 그러나, 선행 연구들 중 Straus와 Gelles에 의해 이루어진 1985년 전미 가정폭력조사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지만 남성에 의한 아내구타가 11.6%인데 비해 아내에 의한 남편구타는 이보다 높은 12.4%로 나타나 오히려 여성의 폭력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별 요인도 연령 요인과 마찬가지로 일관성 있는 상관관계가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학력 요인의 경우, 선행 연구에 의하면 학력이 낮을수록 보다 폭력을 많이 행사한다는 경향과 이와 상반되게 학력이 높을수록 보다 폭력을 많이 행사한다는 연구 결과가 동시에 존재한다. Steinmetz(1977)와 Gelles(1979)는 남편의 학력 수준과 폭력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나타남을 밝혔다. 즉 학력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폭력보다는 이성적인 논의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Rounsaville(1978)의 연구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폭력을 더 많이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ornung(1981)과 Kim(1993)은 남성의 교육 수준과 폭력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김재엽(1998)의 연구에서도 노인 남성의 학력은 아내 구타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현재까지 교육 수준과 아내구타 사이에는 일관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직업 요인의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은 보다 폭력적인 것으로 보고된다. 1975년 전미 가정폭력 조사에 의하면 실업 상태 혹은 시간제 고용상태에 있는 남성이 완전 고용에 있는 남성보다 폭력이 심하였고, 생산직(Blue-color)노동자들이 사무직(White-color)노동자들보다 2배 이상 높은 폭력률을 보였다(Straus,1990). Steinmetz(1987)도 실업 상태가 남편들에게 그들의 가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방해하므로 아내 구타와 관련이 많다고 지적하였고, Peterson(1980)도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 아내 구타가 적다고 보고하였다(김갑숙, 1991). 그러나, 재미 한인을 대상으로 한 김재엽의 연구(김재엽, 1997)에서는 직업의 유무나 유형이 부부 폭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 수준의 경우, 소득과 부부 폭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부부폭력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와 소득과는 상관이 없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Dibble & Straus(1990)는 저소득층 남편들은 다른 자원이 부족하므로 아내를 통제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반면 고소득층 남편들은 폭력 이외의 이성적인 논의와 같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1985년 Straus의 조사에서도 저소득층의 가족에서 발생하는 폭력률이 고소득층

에 비해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재엽(1993, 1998)은 부부 폭력과 소득 수준과는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 부부폭력 문제가 저소득층에 심각하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고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가정의 부부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계층적 변인이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어떠한가?

둘째, 폭력 주체와 폭력 정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가정폭력의 원인으로 사회계층이론이 우리 사회에서도 검증되는가를 살펴본다.

(사회계층변인으로는 연령, 학력, 직업유형, 소득수준 등이 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1) 표본의 설계

전국가정폭력조사는 전국민을 대표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본연구 조사에서는 표본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층화표집(stratified random sampling)함으로써 조사결과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특징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실태와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은 20세 이상 결혼한 남녀(동거, 사별, 이혼, 별거 중인 남녀 포함)로 했다. 본 연구에서 표본을 선정한 세부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표본수 결정 및 조사대상지역을 구분하는 것이다. 먼저, 본 조사의 전체표본수는 1500이다. 이와 같이 전체표본수를 1,500명으로 결정한 이유는 대략 이 수치가 $\pm 2.5\%$ 의 허용오차(Confidence Interval)와 95%의 신뢰도(Confidence Level)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표본의 크기이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것이다.

$$n = (z / w)^2 \quad \text{즉,} \quad n = (1.96 / 0.05)^2 = 1,536$$

둘째, 이상과 같이 전체표본수를 결정한 후 1995년 전국인구 및 주택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지역을 구분하였다. 1차적인 지역구분을 바탕으로 다단계지역표본추출법(multi-area sampling)을 사용하여 표본이 한 두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인구비에 일치하도록 표본수를 결정하였다.

2) 측정도구

가정폭력은 CTS(The Conflict Tactics Scales)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CTS는 갈등관리행동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척도로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가족의 폭력 또는 구타를 측정하는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CTS척도 중 폭력행동에 해당하는 8문항 중 상대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하지 않는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찼다' 문항을 제외한 7문항을 Straus와 Gelles의 분류에 따라서 경미한 폭력과 심각한 폭력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경미한 폭력은 ①상대에게 물건을 집어 던졌다 ②세계 밀쳤다 ③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심각한 폭력은 ①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②물건(책,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③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④칼(가위)이나 총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측정기간은 조사시점부터 1년전까지 하기로 하였다.

3) 자료 수집 방법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전화설문조사를 위해 전국 대학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 학부생을 중심으로 전화설문조사원을 모집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인구 할당 비율에 따라 전국 전화번호 연명부에서 무작위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훈련된 면접원에 의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설계에 의해 선정된 전국 20세 이상의 기혼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1997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집된 설문은 1,523사례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PC+을 이용하여, 백분율, Chi-Square, Logistic regression 사용하였다.

IV. 결과분석

1. 한국 가정의 부부폭력 실태

1) 부부폭력 발생률

본 연구조사의 결과 한국 가정에서 부부폭력의 발생률은 3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쌍중 3쌍이 부부폭력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부폭력이 한국 사회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한국 가정에서 부부폭력 발생률을 1997년 통계청 자료에 근거로 우리 나라 전국 인구에 적용하여 살펴보면, 한국 전체 1,300만 쌍의 부부 중 약 408만 쌍의 부부가 1년에 적어도 1회 이상 폭력을 경험한다고 추산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추정치는 최소한의 추정치라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폭력의 가해자 대부분이 자신의 공격행위에 대하여 실제보다 적게 보고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1985년에 실시된 전국가정폭력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응답자의 경우 전체의 4.9%가 남편에게 '심각한 폭력'을 당했다고 보고하였는데 반해 남성의 경우는 전체의 1.3%만이 적어도 1회 이상 자신의 아내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Straus와 Gelles는 이러한 수치상의 불일치에 대하여 가해자는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폭력행위를 실제 발생건수보다 적게 보고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폭력행위의 비율은 1985년 조사에서 나타난 수치보다 적어도 2배가 넘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만약 이러한 추정이 사실이라면, 한국 가정에서 부부폭력 발생률은 31.4%보다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부부폭력률은 다른 국가와 단순히 그 비율을 비교하였을 경우에도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1은 부부폭력의 현상적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미국에서 1985년에 실시된 전미 가정폭력조사의 결과와 1993년 재미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재미한국인 가정폭력의 조사 결과 및 1994년 아시아 국가중 홍콩에서 실시된 가정폭력조사의 결과를 한국과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들 각 실태조사는 공통적으로 CTS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것이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국 가정에서의 부부폭력발생률은 다른 사회의 발생률보다 훨씬 높다. 즉, 한국 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서구사회인 미국의 1985년 부부폭력률 16.1%보다 2배 이상 높으며, 같은 아시아권인 홍콩의 14.1%보다 3배에 가깝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2년 미국 내에 거주하는 재미한국인에 대한 18.8%의 부부폭력 발생률보다 1.5배 이상 높았다. 이는 우리 나라의 부부폭력발생률이 다른 사회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과 사회문제로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표 1> 국가간 부부폭력발생률

폭력 유형	부부폭력 발생률			
	미 국 ¹	재미한국인 ²	홍 콩 ³	한 국
	1985 (n=3520)	1993 (n=256)	1994 (n=382)	1997 (n=1523)
부 부 폭 력	16.1	18.8	14.2	31.4

1. 전미 가정폭력실태조사는 1985년 Strauss와 Gelles에 의해 전미 3,520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 재미 한국인가정폭력실태조사는 1993년 Kim에 의해 뉴욕과 시카고 한인 256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3. 홍콩 가정폭력실태조사는 1994년 So-kum Tang에 의해 홍콩 382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 폭력 주체별 부부폭력 발생률

부부폭력은 주체에 따라 크게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 및 아내에 의한 남편구타, 그리고 남편과 아내 모두 폭력을 행사하는 상호폭력으로 구분된다. 한국 가정의 부부폭력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 가정에서는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는 우리 나라에서의 폭력 주체에 따른 부부폭력의 발생률과 우리 나라 전체 인구에 적용한 부부폭력발생가구수를 제시한 것이다.

<표 2> 폭력 주체별 부부폭력 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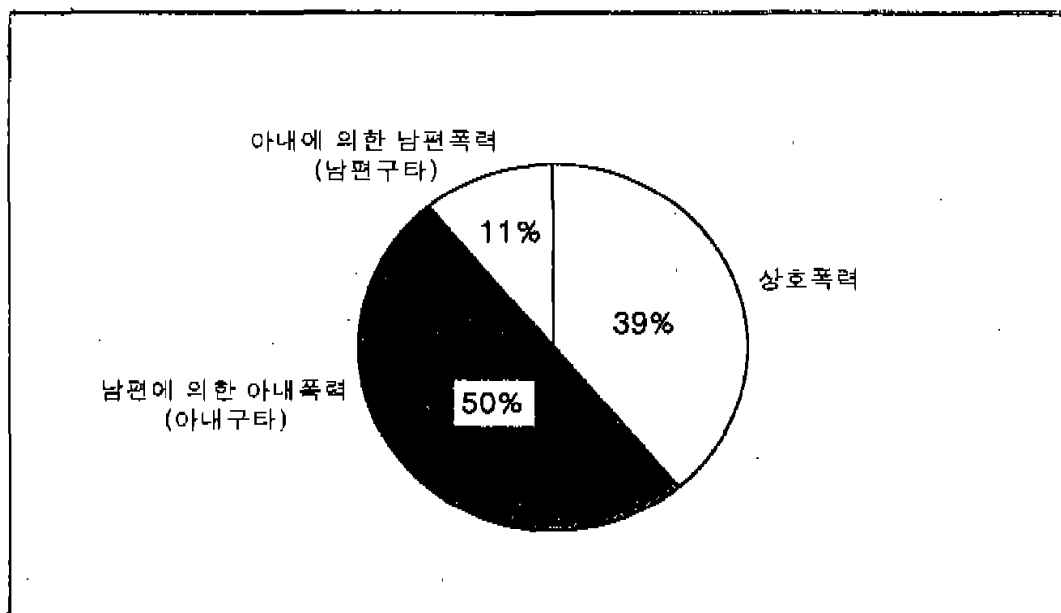
폭력주체에 따른 폭력유형	부부폭력 발생률(%)	추정 발생가구 수
	(n=1,279)	(n=1,300만 ¹)
전체폭력	31.4	4,082,000
아내구타	27.9	3,627,000
남편구타	15.8	2,054,000
상호폭력	12.3	1,599,000

1. 1995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전국의 일반가구(Ordinary households)는 2,958,181 가구이다. 비례계산의 편리를 위해 백만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1300만 가구 값을 얻었다(한국통계월보 39권 9호, 통계청).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가정에서 남편에 의해 이루어진 아내에 대한 폭력률은

27.9%로서 아내에 의한 남편의 폭력률 15.8%보다 약 2배정도 높았다. 그런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이러한 결과가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가 남편구타보다 2배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율과 아내에 의한 남편구타률에는 상호폭력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부부가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상호폭력률은 12.3%였다. 따라서 순수하게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율은 27.9%에서 상호폭력률을 뺀 15.6%가 되며, 아내에 의한 남편구타율은 이의 1/5에 불과한 3.5%에 그치고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 상호폭력률을 통제하게 되면 남편의 아내구타율은 아내의 남편구타율에 비해 약 5배 이상 높다. 또한 아내에 의한 남편구타율 15.8%에 12.3%의 상호폭력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서 아내에 의한 남편구타를 남편을 구타하는 폭력으로서 해석하기보다는 남편의 폭력에 맞서는 폭력이 대부분 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폭력의 결과 나타나는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의 폭력은 대부분 자기 방어적이며 그 정도에 있어서도 경미한 정도에 그친다. 또한 같은 심한 폭력을 행사했을지라도 여성의 행위와 남성의 행위보다 힘 또는 공포(위압)의 측면에서 월등히 차이가 난다. 그러나 CTS로는 이러한 차이를 측정할 수 없다. CTS는 단지 해당 행위의 행사 유무만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부폭력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CTS의 한계점이다.

<그림 1>은 부부폭력유형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이 부부폭력중 절반에 해당하는 50%는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아내구타)이며,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남편구타)은 11%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머지 39%는 상호폭력이다.



<그림 1> 부부폭력 유형별 전체폭력 분포

3) 폭력 정도별 부부폭력 발생률

남편과 아내의 부부폭력의 차이는 폭력의 정도에 따른 부부폭력 발생률을 살펴 보면 더욱 분명해 진다. <표 3>은 폭력 정도에 따라 부부 폭력을 경미한 폭력과 심각한 폭력으로 나누어 폭력 유형별 발생률을 살펴보고 이를 미국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본 것이다. 여기서 경미한 폭력은 상대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밀치거나,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것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정도의 폭력을 말하며, 심각한 폭력은 발이나 주먹으로 구타, 물건(현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구타, 칼(가위)이나 총으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과 같은 심한 정도의 폭력이다.

<표 3> 폭력 정도별 부부폭력 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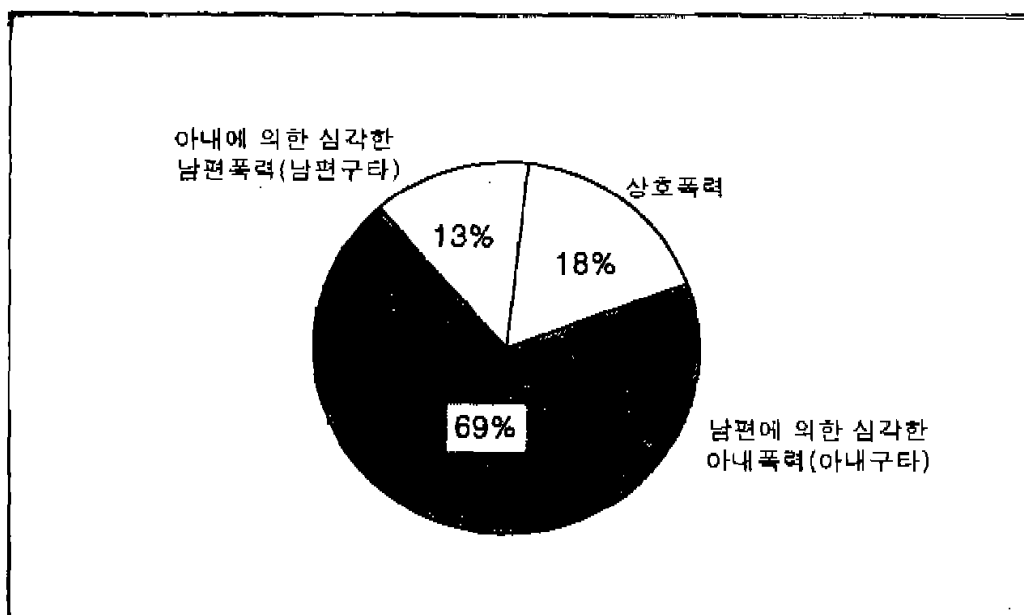
폭 력 유 형	부 부 폭 력 발 생 률(%)			
	한 국(1997)		미 국(1985)	
	경미한 폭력	심각한 폭력	경미한 폭력	심각한 폭력
전체 폭력	31.0	9.1	16.1	6.3
아내구타	27.5	7.9	10.2	3.4
남편구타	15.5	2.8	11.9	4.8
상호 폭력	12.0	1.6		

우리 나라의 경우, 경미한 폭력에 있어서 폭력 발생률은 앞에서의 전반적인 부부폭력 발생률과 유사하였다. 그런데 심각한 폭력의 경우, 아내구타율은 7.9%로서 남편은 지난 한 해 동안 아내를 발, 주먹, 물건으로 때리거나, 사정없이 구타하거나, 칼·총으로 위협했던 것을 의미하며 아내의 2.8%도 이와 같은 심각한 폭력을 남편에게 행사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심한 폭력을 행사한 상호폭력률은 1.6% 였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행사한 심각한 폭력률에서 상호폭력 비율 1.6%를 제외하면, 각각 남편의 6.3%, 아내의 1.2%가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심각한 폭력에 있어서도 아내구타율이 반대의 경우보다 5배 이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율이 아내에 의한 남편구타율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 한국 가정 폭력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부부폭력 결과와 미국 부부폭력의 결과를 비교하면 쉽게 드러난다. 표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경미한 폭력과 심각한 폭력 모두 남, 여의 성차에 따른 폭력률에 차이가 별로 없다. 반면, 한국의 경우,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율이 아내에 의한 남편 구타에 비해 거의 5배나 높았다. 또한 한국 남편에 의한 심각한

아내구타율(7.9%)은 미국에서의 심각한 아내구타율(3.4%)보다 약 2.5배나 높아 한국의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율이 심각함을 말해 준다. 이에 반해 한국의 아내에 의한 심각한 남편구타율(2.8%)은 미국에서의 심각한 남편구타율(4.8%)보다 낮게 나타나, 한국 사회에서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또한 반증해 주고 있다.

<그림 2>는 부부폭력 유형별로 심각한 수준의 폭력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심각한 수준의 부부폭력 중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약 70%는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이다. 이에 비해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은 13%에 불과하며, 나머지 18%는 상호폭력이다.



<그림 2> 폭력 주체에 따른 심각한 폭력 분포

경미한 폭력, 심각한 폭력 각각을 구체적 폭력 항목에 따라 나누어 부부폭력 발생률을 살펴 보면 <표 6>과 같이 나타난다. <표 6>에서와 같이 아내구타율, 남편구타율 및 상호폭력률은 모두 폭력의 정도가 심해질수록(경미한 폭력 → 심각한 폭력)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모든 폭력 항목에서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율이 가장 높은 폭력률을 보이고 있다. 손바닥으로 뺨 때리기를 제외한 경미한 폭력(상대에게 물건던지거나 세게 밀치기 등)의 경우, 아내구타율이 남편구타율보다 약 1.5배 정도 높았으나, 심각한 폭력 항목(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기, 물건으로 구타, 사정없이 마구 구타, 칼이나 총으로 위협하거나 사용 등)의 경우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율이 거의 3배 이상 높음을 볼 수 있다.

<표 6> 폭력 항목별 부부폭력 발생률

정도에 따른 폭력 항목폭력	부부폭력 발생률(%)		
	남편⇒아내	아내⇒남편	남편⇔아내
경미한 폭력			
1.상대에게 물건던지기	16.6	10.1	6.1
2.세계 밀치기	17.2	9.7	3.0
3.손바닥으로 뺨 때리기	13.1	3.0	2.0
심각한 폭력			
1.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기	7.2	2.3	1.3
2.물건(혁명,몽둥이,골프채 등)으로 구타	1.5	0.4	0.0
3.사정없이 마구 구타	2.3	0.8	0.3
4.칼(가위)이나 총으로 위협하거나 사용	0.9	0.3	0.1

2. 아내 구타에 미치는 남성의 사회계층적 요인 분석

우리 나라의 경우 부부폭력발생률은 31.4%로서 세 부부 중 한 부부가 지난 1년 동안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부부폭력은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율이 아내에 의한 남편구타율보다 약 5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부부 폭력 유형 중 아내구타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아내구타율은 폭력 정도가 심각해질수록 남편구타율에 비해 그 비율이 점점 높아져 많은 아내들이 일방적으로 남편에 의해 심각한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우리 나라의 부부폭력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아내구타이며, 또한 폭력 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부부의 부부 폭력 중 대표적인 유형을 아내 구타라 규정하고 이러한 아내 구타에 영향을 미치는 남편의 사회계층적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조사 대상 남성의 사회계층적 특성

<표 7>은 조사 대상 남성의 사회계층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연령을 살펴 보면, 조사 대상 가정 중 30대 남성이 35.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40대 26.0%, 60대 14.2%, 50대 18.1%, 20대 2.4%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44세로 조사되었다.

남성의 학력은 고졸이 37.1%로 가장 높고, 대학교 졸업 이상이 전체 34.7%, 중졸 이하가 23.3%를 차지하였다.

남성의 월평균 소득의 경우, 평균 수입액은 119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남성은 전체 가정의 9.2%, 119만원 이하 소득을 갖는 남성은 27.6%, 119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갖는 남성은 44.5%, 200만원 이상 소득을 갖는 남성은 18.6%로 조사되었다.

직업 유형은 크게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이분하였다. 생산직에는 생산기술직, 피고용 서비스, 단순 노동자, 농/임/어업, 소규모 자영업 등의 직종을 포함하였고, 사무직에는 연구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공무원, 학생, 중규모 이상 사업가 등의 직종을 포함하였다. 조사 대상 남성의 68.6%가 생산직에 종사하며, 41.4%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조사 대상의 남성의 사회계층적 특성

변인	구분	남성	
		빈도(명)	백분율(%)
연령	20대	82	6.4
	30대	451	35.3
	40대	332	26.0
	50대	232	18.1
	60대	182	14.2
	계	1279	100.0
학력	중졸이하	294	23.3
	고졸	467	37.1
	전문대졸	62	4.9
	대졸이상	437	34.7
	계	1260	100.0
월평균수입	없음	102	9.2
	119만원 이하	306	27.6
	119-200만원	493	44.5
	201-300만원	153	13.8
	300만원 이상	53	4.8
	계	1107	100.0
직업 유형	생산직	471	41.1
	사무직	666	68.6
	계	1173	100.0

2) 아내구타와 사회계층적 요인과의 관계

(1) 경미한 아내구타¹⁾

<표 8>의 a항을 보면 연령이 경미한 아내구타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p<.01379$). 경미한 아내구타율은 20대 남성의 경우 39.0%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 남성의 경우 20.9%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사실은 연령이 낮을수록 아내 구타율이 높다는 것, 즉 지난 1년 동안 20대 남편들이 아내를 구타한 경험이 가장 많으며, 남편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내를 구타한 경험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력은 경미한 아내구타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38$). 표8의 b항을 보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성의 아내구타율이 21.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중졸 이하, 고졸의 학력 소지 집단이 각각 30.3%, 29.3%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 학력이 높을수록 아내구타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사 대상 남성의 직업 유형은 경미한 아내구타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0049$) 표8의 c항에서 나타난 것처럼, 직업 유형을 사무직과 생산직으로 이분하고 각각의 집단의 경미한 아내구타율을 비교해 본 결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남성의 아내 구타율은 22.9%, 생산직의 경우 30.5%로 조사되었다. 즉 이것은 생산직에 종사하는 남성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남성보다 아내를 구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 수준은 경미한 아내구타와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45161$) <표 8>의 d항에 보면, 소득이 전혀 없는 집단의 경미한 아내구타율이 27.5%,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집단의 경미한 아내구타율이 28.3%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경미한 아내구타가 행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연령, 학력, 직업 유형 등의 사회계층적 요인은 경미한 아내구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소득 수준은 경미한 아내구타와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경미한 아내구타는 남성의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지만, 남성이 젊고 생산직에 종사하며 학력이 낮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정폭력의 원인에 대한 사회계층이론에서 저소득 계층에서 보다 경미한 수준의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결과를 일정부분 지지하는 동시에 일정 부분 반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경미한 아내구타에는 1.상대에게 물건던지기, 2.세계 밀치기, 3.손바닥으로 뺨때리기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표 8> 사회계층적 요인과 경미한 폭력

사회계층적 요인	폭력유무		경미한 폭력 유무		χ^2	Sig.
	폭력있음	폭력없음	폭력있음	폭력없음		
a. 연령						
n						
20 대	(82)	32 (39.0)	50 (61.0)	12.5345	0.01379*	
30 대	(451)	123 (27.3)	328 (72.7)			
40 대	(332)	102 (30.7)	230 (69.3)			
50 대	(232)	56 (24.1)	176 (75.9)			
60대이상	(182)	38 (20.9)	144 (79.1)			
b. 학 력						
중졸이하	(294)	89 (30.3)	205 (69.7)	12.6817	0.00538**	
고 졸	(467)	137 (29.3)	330 (70.7)			
전문대졸	(62)	23 (37.1)	39 (62.9)			
대졸이상	(437)	94 (21.5)	343 (78.5)			
c. 직업유형						
사 무 직	(471)	108 (22.9)	363 (77.1)	9.4923	0.0049**	
생 산 직	(666)	203 (30.5)	463 (69.5)			
d. 소득수준						
수입 없음	(102)	28 (27.5)	74 (72.5)	3.6761	0.45161	
100만원이하	(306)	94 (30.7)	212 (69.3)			
101-200만원	(493)	138 (28.0)	355 (72.0)			
201-300만원	(153)	34 (22.2)	119 (77.8)			
301만원이상	(53)	15 (28.3)	38 (71.7)			

* p<0.05, ** p<0.01, *** p<0.001

다음에서는 아내구타문제에 있어서 정책적인 또는 임상적 개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심각한 아내구타의 경우, 사회계층적 요인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심한 아내구타2)

연령, 학력, 직업 유형, 소득 수준 등의 사회계층적 요인 중 직업 유형만이 심각한 아내구타

2) 심각한 아내구타에는 1.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기, 2.물건(책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구타, 3.사정없이 마구 구타, 4.칼(가위)이나 총으로 위협하거나 사용하기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미한 폭력과 심각한 폭력을 모두 포함한 아내구타에 영향을 미쳤던 연령, 학력 등의 요인은 심각한 아내구타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소득 수준은 어느 경우에도 아내구타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사회계층적 변인과 아내구타와의 관계

사회계층적 요인	폭력유무 n	심각한 폭력 유무		χ^2	Sig.
		폭력있음	폭력없음		
a. 연 령					
20 대	(82)	10 (12.2)	72 (87.8)	6.2516	0.18113
30 대	(451)	28 (6.2)	423 (93.8)		
40 대	(332)	28 (8.4)	304 (91.6)		
50 대	(232)	24 (10.3)	208 (89.7)		
60대이상	(182)	12 (6.6)	170 (93.4)		
b. 학 력					
중졸이하	(294)	27 (9.2)	267 (90.8)	5.7660	0.12356
고 졸	(467)	42 (9.0)	425 (91.0)		
전문대졸	(62)	3 (4.8)	59 (95.2)		
대졸이상	(437)	24 (5.5)	413 (94.5)		
c. 직업유형					
사 무 직	(457)	23 (5.0)	434 (95.0)	8.3617	0.01528*
생 산 직	(647)	63 (9.7)	584 (90.3)		
기 타	(138)	10 (7.2)	128 (92.8)		
d. 소득수준					
수입 없음	(102)	6 (5.9)	96 (94.1)	7.3713	0.11752
100만원이하	(306)	30 (9.8)	276 (90.2)		
101-200만원	(493)	45 (9.1)	448 (90.9)		
201-300만원	(153)	5 (3.3)	148 (96.7)		
301만원이상	(53)	5 (9.4)	48 (90.6)		

* p<0.05, ** p<0.01, *** p<0.001

<표 9>의 a항에서 보는 것처럼 20대의 경우 심각한 아내 구타율은 12.2%로 모든 연령대 중

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60대 이상의 경우 6.6%로 가장 낮은 비율을 가지는 것으로 역시 조사되었으나 이러한 수치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p < .18113$). 따라서 연령 요인은 심각한 아내구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젊은 사람일수록 아내를 더욱 심하게 구타할 것이라는 의견들과는 다르다. 남성의 학력은 심각한 아내구타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p < .12356$). 표9의 b항에서 보면, 중졸 이하 남성의 경우 심각한 아내구타율이 가장 높고(9.2%), 대졸 이상의 경우 5.5%로 가장 낮지만 이러한 학력에 따른 각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 학력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아내를 더욱 심하게 구타할 것이라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남성의 직업 유형은 심각한 아내 구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31$). 표9의 c항에서와 같이, 직업 유형을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이분하여 각 집단의 아내 구타율 비교해 본 결과 생산직에 종사하는 남성들(9.6%)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남성들(4.9%)에 비해 아내구타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남성들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남성들보다 지난 1년 동안 아내를 심하게 구타한 경향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소득 수준은 심각한 아내 구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 < .11752$). 표9의 d항을 보면, 소득이 전혀 없는 집단의 경우 심각한 아내구타율이 5.9%이고, 119만원 이하의 소득 집단의 경우 9.8%이며,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소득 집단과 300만원 이상의 소득 집단의 경우 각각 3.3%, 9.4%로 나타나 소득 정도와 심한 아내구타와는 정비례나 혹은 반비례인 경향도 발견할 수 없었다. 저소득계층의 남성들이 더욱 아내를 구타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며 구타 정도에 있어서도 더욱 폭력적일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표 10>은 사회계층적 변인들이 각각 심한 아내구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 모형 분석에서 보면 직업 유형을 제외한 연령, 학력, 소득수준 등의 변인들은 독립적으로도 심각한 아내 구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계층적인 변인들만으로는 심한 아내구타를 설명하는데 불충분한 것이다. 심한 아내구타는 남성이 젊은층이거나 장년층, 중졸자나 대졸자, 저소득자나 고소득자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생산직에 종사하는 남성들이 아내를 보다 심하게 구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이 생산직에 종사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생산직의 특성과 관련된 기타 변수, 예를 들면 장시간 노동, 노동 강도에서 오는 피로 또는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추후의 연구가 요청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미한 수준과 마찬가지로 저소득 계층에서 보다 심각한 폭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하위계층이론을 일정부분 인정하지만, 대체로 반박하는 결과이다.

<표 10>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직업유형이 심각한 아내 구타에 미치는 영향³⁾

Godness of fit	934.478		
	Chi-Square	df	Significance
Model Chi-Square	17,671	11	.0895
Improvement	17,671	11	.0895

변 수	망정식에서의 변수들			
	Exp(B)	B	S.E.	Sig.
1. 연령	-	-	-	.7069
1)20대	1.0000	-	-	-
2)30대	1.4270	.3555	.4566	.4361
3)40대	.9418	.0599	.2575	.8160
4)50대	1.0875	.0839	.2546	.7418
5)60대 이상	1.1954	.1785	.2818	.5266
2. 학력	-	-	-	.8588
1)중졸이하	1.0000	-	-	-
2)고졸	1.2716	.2403	.3157	.4466
3)전문대졸	1.1380	.1293	.2591	.6178
4)대졸이상	.6303	-.4616	.5621	.4115
3. 소득수준	-	-	-	.1411
1)수입없음	1.0000	-	-	-
2)0-119만원	1.2882	.2532	.2276	.2660
3)120-199만원	1.4709	.3859	.2087	.0644
4)200만원 이상	.5665	-.5700	.3104	.0663
4. 직업유형				
1)생산직	1.0000	-	-	-
2)사무직	.4692	-.7567	.3463	.0289*

3) 경미한 아내구타의 경우,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에서 Predicted 와 Observed case를 분류해 내는데 적합성이 떨어지므로 도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IV. 결론 및 제언

많은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또 다른 사회에서는 부부폭력이 여전히 가정의 영역 속에 제한된 채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실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가정폭력의 실태를 전국적 규모의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였고,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계층적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우리 나라의 경우 부부폭력발생률은 31.4%로서 세 쌍의 부부 중 한 쌍의 부부가 지난 1년 동안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우리 나라 부부폭력률은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율이 아내에 의한 남편구타율보다 약5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부부폭력 유형 중 아내구타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27.9% 즉 3명 중 1명이 지난 한 해 동안 적어도 1회 이상의 폭력을 행사했으며, 심각한 폭력의 경우는 한국 가정의 아내 100명중 8명 이상이 지난 한 해 동안 남편에 의해 구타를 당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비율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약 360만명의 아내가 남편에게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신체적 폭력행위를 당했으며, 103만 명의 한국 여성들은 남편에 의해 심하게 구타당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행사하는 폭력의 발생율도 15.8%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한 폭력에 있어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행사하는 폭력의 발생율은 2.8%에 달했다. 그러나 여성의 폭력은 남편의 폭력에 대한 자기 방어적이며, 그 폭력의 정도도 경미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남편과 아내가 상호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을 여성의 남편에게 행사하는 폭력에서 제외시키면 순수하게 여성에 의해 일어나는 남편에 대한 폭력률이 3.5%로 급격히 낮아진다. 이에 비해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는 상호폭력을 제외하더라도 15.6%라는 높은 폭력률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심한 폭력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어 순수하게 여성에 의한 심한 남편폭력은 1.2%에 불과하였다. 즉 우리 나라의 부부폭력의 대부분은 아내구타이며, 폭력 정도가 심한 수준에서의 희생자 역시 여성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폭력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과 함께 우리 나라 부부폭력 유형 중 대표적인 아내구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계층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경미한 아내구타의 경우, 젊을수록 또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생산직에 종사하는 남성들일수록 아내를 구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 수준은 경미한 아내구타와는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의 경우, 연령이 아내구타와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Suitor, Pillemer & Straus(1990)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 학력이 낮을수록 아내에 대한 구타가 높을 것이라는 Steinmetz(1977)와 Gelles(1979)

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직의 종사하는 남성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남성보다 아내를 구타하는 비율이 높다는 Straus(1990)의 견해를 지지한다. 그러나, Dibble & Straus(1990)가 주장하듯이 저소득층의 남성이 고소득층의 남성보다 아내를 더 구타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지하지 않는다.

한편 심각한 아내구타의 경우, 남성의 연령과 학력 그리고 소득수준은 심각한 아내구타와 무관하며, 생산직에 종사하는 남성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남성에게 비해 보다 많이 심각한 아내구타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의 경우, 연령과 아내구타와는 연관성이 없다는 Gelles(1974)와 김재엽(1998)의 연구를 지지한다. 또한 학력과 아내구타와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Hornung(1981)과 김재엽(1997)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직업유형의 경우, 생산직의 종사하는 남성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남성보다 아내를 구타하는 비율이 높다는 Straus(1990)의 견해를 지지한다. 소득과 아내구타와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김재엽(1997,1998)의 견해를 지지하면서 Straus(1990)의 전미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아내구타와 사회계층과의 연관성은 경미한 폭력에서는 상당부분이 입증되었으나, 심한 폭력의 경우는 반대로 상당부분 지지되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볼 때 경미한 아내구타는 특정 집단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아내구타의 예방 및 심각한 아내구타로의 발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젊고 학력수준이 낮으며,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심각한 아내구타의 경우, 해마다 100만명 이상의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는 특정 연령, 특정 학력수준, 특정의 소득계층과는 상관없이 심각한 아내구타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 수준에 있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아내구타는 특정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가정에게 해당되는 문제인 것이다. 심각한 아내구타자는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방지관련 특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심각한 아내구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폭력방지관련특별법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또한 모든 계층에게 적용 가능한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문제는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로 볼 수 없으며,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문제로서 치료와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학적 개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것은 가정폭력은 보다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복지적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가정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규명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근거로 향후 우리 문화와 현실에 적절한 임상 및 정책적 사회복지 개입방법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갑숙. 1991. "부부갈등이 부부폭력과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재엽. 1996.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개입방안연구 -임상치료프로그램 및 정책적 제언을 중심으로". 동광. 통권 제93호.
- _____. 1997. "사회적 스트레스와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 제5권.
- _____. 1997. "한국인의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가정폭력과 아동복지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_____. 1997. "열등의식과 성역할태도가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과 치료모형에 관한 연구 -영세 빈곤가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33호.
- _____. 1998. "한국 노인 부부의 부부폭력실태와 사회인구학적 요인과의 관계 연구". 노년학회지. Vol. 18. No. 1.
- 한국여성개발원. 1993.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의 남편이 아내 폭력 현황을 중심으로.
- Dibble & Straus. 1990. "Some Social Structure Determinants of Inconsistency between Attitudes and Behavior: The Case of Family Violence." in *Physical Violence in Americal Gamilies*. edited by Straus & Gells, Transaction.
- Gells, Richard J. 1974. *The Violent home : a study of physical aggression between Husbands and Wive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_____. 1979. "Etiology of Violence : Overcommong Fallacious Reasoning in Understanding Family Violence and Child Abuse." *Family Violence*. edited by R. Gell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Kim, J. Y. 1993. "Family Violence in Korean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Chicago.
- Rounsaville, B. J. 1978. "Theories in Marital Violence: Evidence from a Study of Battered Woman." *Victimology*. 3.
- Steinmetz, Suzzane K. 1977. *The Cycle of Violence : Assertive, Aggressive, and Abusive Family Interaction*. New York: Praeger.
- _____. 1977. "The Use of Force for Resolving Family Conflict : The Training Ground for

- Abuse." *Family Coordinator*. 26.
- So-kum Tang. 1994. "Prevalence of Spouse Agression in Hong Kong."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 9. No.4.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ruary.
- _____. 1980. "Social Stress and Marital violence in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Families." In *Forensic Psychology and Psychiatry*, edited by F.Wright, C. Bahn, and R. Rieber, *Annals of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347.
- Straus, M. A. and R. J. Gelles. 1980.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Codebook 7733. Ann Arbo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 Straus, M. A. and R. J. Gelles. 1990.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Transaction Publishers.
- Suitor, Pillemer & Straus. 1990. "Marital Violence in a Life Course Perspective." in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edited by Straus & Gells, Transaction.

Abstract

Spousal Abuse and Social Class in Korean National Family Violence Survey

Kim, Jae Yop

Although there is a little concern about wife beating, the problem is in very serious level in Korean famili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1)to estimate the incidence of spousal abuse in Korean families; (2)to examine the influences of social class factors on spousal abuse.

The results show that almost 1 out of 3 husbands in Korean families carried out 1 or more physical violence acts against their wives during the last year and that some social class factor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wife abuse in korean families.

The study also found that age, education, and job status a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minor husband-to-wife violence and that job status, blue collar husband,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evere husband-to-wife violence. However, except for job status, no other social factors are associated with severe husband-to-wife violence.

Tel : 02-361-2926

Fax : 02-361-4920

E-mail : jaeyop@bubble.yonsei.ac.kr